



제 418회 국회 (정 기 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규정 정비〉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73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관련 규정 정비	2
※ 참고자료	9
1. 공동사업지원자금 개관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7.
3. 회부연월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 역시 제한적임.

정부에서는 '21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했으며, '22년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으로 고시한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관련 규정 정비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을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하고,

기업 출연금 외에도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조성된 자금의 사용범위에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업무) ① ~ ⑦ (생략)	제106조(업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중앙회는 <u>회원</u> 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⑧----- <u>회원 및 중소기업</u> ----- ----- -----.

현행	개정안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u>기업</u>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u>정보화</u>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⑨ (생략)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u>기업,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개인</u>-----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u>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u> ----- 바.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06조제8항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등으로 공동사업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회원의 기술개발, 시험연구, 해외시장개척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이러한 공동사업지원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은 2006년 동법 개정으로 동 조항이 신설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 기업,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민간자금임.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 조합 구성원간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²⁾임을 감안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법률의 규정 취지 및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등을 감안,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공동사업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회원 등 중소기업의 공동사업³⁾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⁴⁾.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신설(2021.12.)하고, 공동사업지원기금에의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에 포함하여 손금 처리가 인정(2022.12.)되도록 하는 등, 세제상 인센티브도 법제화되었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환경개선·상표·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제67조의5(업무) ① 사업조합은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 기타 서어비스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제74조(업무) ①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제5호·제9호·제10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생산·가공·판매·구매·보관·운송·환경개선·상표 및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제87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9.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3) <중소기업 공동사업으로 검토가 가능한 사업유형>

1. 공동구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4)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조성 및 관리주체로서, 자금을 조성, 운용 및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그런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영세성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사업 지원자금을 통한 기술개발, 시험연구, 해외시장개척 등의 공동사업이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한 공동사업 지원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까지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조성 및 활용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안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통한 공동사업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까지도 포함하려는 것인데,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통한 공동사업 지원대상에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즉, 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현행법 제106조의2에서는 이러한 현행법 제35조제3항을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⁶⁾하고 있음.

5)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한 공동사업지원자금 규모는 2024년 7월말 현재 3억 5,000만원(누계기준)에 불과함.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2024년 7월말 현재 전혀 집행하고 있지 않고 전액 예치중인 것으로 파악됨(중소기업중앙회 자체계정인 협동조합기능활성화특별회계에 전액 예치중임).

이에 현행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35조제3항 및 제106조의2에 따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 제106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한 공동사업”은 준용규정(현행법 제106조의2)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현행법 제106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한 공동사업”이 준용규정(현행법 제106조의2)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⁷⁾에는 법 개정 없이도 현행법 제35조제3항 및 제106조의2에 따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현행법 제106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한 공동사업”이 준용규정(현행법 제106조의2)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업중앙회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처럼 법 해석에 따라 준용규정(현행법 제106조의2)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한 공동사업” 지원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까지도 포함하려는 경우 개정안과 같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로 「농업협동조합법」과 같은 유사입법례에서는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⁸⁾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106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한 공동사업”이 준용규정(현행법 제106조의2)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정안과 같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내지 않은 중소기업까지도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과 동일하게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용한 공동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

8) 「농업협동조합법」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등의 제한을 둬야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106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에 준용되는 현행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조성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공동사업지원자금 개관

1

공동사업지원자금 개요

- (관련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제8항)
- (주요내용) 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 위해 설치·운영토록 규정
- (사용범위) 공동기술 및 상표개발, 공동시험연구, 공동구·판매, 국내외 판로 개척, 국내외 규격인증획득, 정보화사업 등

2

공동사업지원자금 진행경과

- ('06.4.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통해 공동사업자금 설치근거 마련
* 기협법 제106조 제8항 신설 : 중앙회는 회원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 ('21.12.28) 조특법 개정* 통해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특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22.3.18) 중기부,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에 주요사업 반영
* 제3차 활성화계획 : 3년('22~'24년) 동안, 1,000억원 조성
- ('22.12.30)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기재부 고시)

3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인센티브

-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
- 법인세 공제 : 조특법 제8조의3에 따른 출연금액 10%상당 세액공제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 조특법 제100조의32,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